

제1916호 고양시보

2022년 10월 7일(금)

차 례

입법예고

고양시 공고 제2022-2478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고양시 공고 제2022-2479호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고양시 공고 제2022-2480호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7
고양시 공고 제2022-2484호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0
고양시 공고 제2022-2490호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82

고 시

고양시 덕양구 고시 제2022-18호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86
고양시 고시 제2022-322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53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88
고양시 고시 제2022-326호	도시계획시설[학교 제112호(명현학교)]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92
고양시 고시 제2022-329호	도로명주소 고시	94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표준안’ 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인사규칙을 개정사항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원서를 규정함(안 제5조제1항).
- 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함(안 제6조제3항).
- 다. 경력 및 신규임용 시설(수도토목) 직류 추가 및 응시자격증을 정비함(안 별표 7, 별표 11 및 별표 14).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22년 10월 27일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행정지원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행정지원과 인사팀(031-8075-2387)
 - 팩 스 : 031-8075-4903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에 관하여” 를 “등에”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응시하고자” 를 “응시하려고” 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또는” 을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별지 제5호서식” 을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 으로 한다.

별표 7 제1호 중 행정란을 삭제하고, 같은 호 농업의 일반농업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시설의 일반토목란 다음에 수도토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수도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별표 7 제2호가목 중 의료기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 관리사(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 관리사(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 관리사(5) 안경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 관리사(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안경사
------	------	--	--	--	--	---

별표 8 제2호 비고 및 제3호 비고에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되 고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별표 11 제1호 중 농업의 일반농업란 중 8·9급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시설의 일반토목란을 일반토목 및 수도토목란으로 한다.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

별표 14 제1호 중 농업의 일반농업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시설의 일반토목란 다음에 수도토목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반농업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 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 능 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농산물품질관 리사
수도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 용토목제도, 측량	
--	--	--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행정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행정지원과장 이 재 복
	팀 장 성 명	인사팀장 문 병 훈
	담 당 자 성명·전화	윤 상 건 031-8075-2387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⑤ 응시연도 및 횟수		년도 제 회			
※ 등록번호		제 회 번				응 시 번 호					
※ 급		직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 글 (한자)		② 생 년 월 일 년 월 일(세)		③ 성별 남 ☐ 여 ☐		④ 희망지역 제1희망 : 구 제2희망 : 구		※ 등록심사			
								사진대조		서류심사	
								(인)		(인)	
⑥ 현 주소		E-mail :							휴대폰 :		
⑦ 병 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년 월 일 제대연월일 : 년 월 일							
		미필사유									
⑧ 학 력											
부 터		까 지		학 력		전공 · 부문 · 과목					
⑨ 자격면허					⑩ 상 별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사 항				
⑪ 특 기			⑫ 취 미			⑬ 종 교					
⑭ 경 력											
부 터		까 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⑮ 가족사항

본인과의 관계	성명	연령	직업	연락처	비고

위 본인은 시험응시합격자와 동일인으로서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임 용 후 보 자 등 록 요 령

각급 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 (1) 사진을 부착한 임용후보자등록원서 1통
- (2) 주민등록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4) 경력증명서 1통(경력이 있는 경우)
- (5) 면허증 또는 기술자격증 사본 1통(면허증 등을 소지한 경우)
-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물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7) 신원진술서(정해진 서식에 사진 2매를 완전 부착할 것) 2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후보자만 제출
- (8)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위 구비서류는 등록원서에 같이 첨부해야 하며, 등록원서와 신원진술서에는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탈모 상반신 사진(3.5x4.5cm, 여권용) 5매가 필요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 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의 경우

- (1) 사진을 부착한 임용후보자등록원서 1통
- (2) 현직 근무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5. 원서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의미가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연월일을 작성할 때에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

한다.

다. 각 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하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한글과 한자를 명확하게 기재한다.
- ② 생 년 월 일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 ③ 성 별남/여 해당 □에 √표를 한다.
- ④ 회 망 지 역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⑤ 시험합격구분(예) 72년, 제1회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⑥ 주 소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도로명기재)
- ⑦ 병 역미필란에는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 후 영장미교부, 징집연기증, 병역면제처분 등 그 밖의 사유를 기재한다.
- ⑧ 학 력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 연수를 기입한다.
- ⑨ 자 격, 면 허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 ⑩ 상 별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 ⑭ 경 력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 ⑮ 가 족 상 황가족의 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연락처 등을 기입한다.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상 생일								/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다른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우 수	
		보 통	
		미 흡	
다른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5호의2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시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상 생일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다른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합격	
다른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7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고양시 인사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																						
전자우편											복수국적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임용시험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고양시 인사위원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시험본부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별지 제8호서식]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고양시 인사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고양시 인사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양시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u>등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등에</u>----- -----.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u>응시하고자</u> 하는 사람은 <u>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u>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 -----<u>응시하려고</u>----- <u>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u>-----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응시수수료) ①~② (생략)	제6조(응시수수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u>또는</u>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응시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 ----- -----<u>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u>----- ----- -----.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u>별지 제5호 서식</u>에 따라 점정한다.	제13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 -----<u>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u>-----.
②~④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7]			[별표 7]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직렬	직류	대상자격증
행정	운수	산업기사 : 철도운송	〈삭제〉		
농업	일반 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u>〈신설〉</u>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업	일반 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u>화훼장식</u>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시설		<u>〈신설〉</u>	시설	수도 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u>교통</u>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계급 직렬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 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u><신 설></u> <u><신 설></u>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임상심리사 1급(7)	임상병리사(8) <u>의무기록사(8)</u>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u><신 설></u> <u><신 설></u>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 1급(3)	임상병리사(5) <u>의무기록사(5)</u>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u><신 설></u> <u><신 설></u>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3)	임상병리사(2) <u>의무기록사(2)</u>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u><신 설></u> <u><신 설></u> 임상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u>의무기록사</u>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u><신 설></u> <u><신 설></u>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 1급(7)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계급 직렬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의료 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u>보건의료정보관리사(12)</u> <u>안경사(12)</u>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임상심리사 1급(7)	임상병리사(8) <u><삭 제></u>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u>보건의료정보관리사(8)</u> <u>안경사(8)</u>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 1급(3)	임상병리사(5) <u><삭 제></u>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u>보건의료정보관리사(5)</u> <u>안경사(5)</u>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3)	임상병리사(2) <u><삭 제></u>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u>보건의료정보관리사(2)</u> <u>안경사(2)</u>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임상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u><삭 제></u>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u>보건의료정보관리사</u> <u>안경사</u>

[별표 8]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1. (생략)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표 생략)

비고

1.~4. (생략)

<신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표 생략)

비고

1.~4. (생략)

<신설>

[별표 8]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등 응시요건
(제15조제8항 관련)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표 현행과 같음)

비고

1.~4. (현행과 같음)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고
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표 현행과 같음)

비고

1.~4. (현행과 같음)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고
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별표 11]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농업	일반 농업	(생략)	(생략)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신설>)

[별표 11]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9조제2항)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직류	5급이상	6·7급	8·9급
농업	일반 농업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농업)

[별표 1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제2항 관련)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	일반 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신 설>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시설	<신 설>		

[별표 1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4조제2항 관련)

1.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렬	직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농업	일반 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시설	수도 토목	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별지 제1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⑥ 응시연도 및 횟수	년도 제 회			
※등록번호	제 회 번			응 시 지 구 (기호) 응 시 번 호	기 호	번		
※ 급	직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 글 (한문)	②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세	④ 성 별 남 ☐ 여 ☐	⑤ 희망지역 제1희망 : 구 제2희망 : 구	※ 등록심사				
				사진대조		서류심사		
				(인)	(인)			
③ 주민등록번호								
⑦ 현주소	E-mail : 휴대폰 :			반명합판 사진 (3.5cm×4.5cm)				
⑧ 병 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년 월 일 제대연월일 : 년 월 일						
미필사유								
⑨ 학 력								
부 터	까 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별지 제1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⑤ 응시연도 및 횟수	년도 제 회			
※등록번호	제 회 번			응 시 지 구 (기호) 응 시 번 호	기 호	번		
※ 급	직			직 급 별	급 직			
① 성 명 한 글 (한자)	② 생 년 월 일 년 월 일 세	③ 성 별 남 ☐ 여 ☐	④ 희망지역 제1희망 : 구 제2희망 : 구	※ 등록심사				
				사진대조		서류심사		
				(인)	(인)			
③ 주민등록번호								
⑥ 현주소	E-mail : 휴대폰 :			여권용 사진 (3.5cm×4.5cm)				
⑦ 병 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년 월 일 제대연월일 : 년 월 일						
미필사유								
⑧ 학 력								
부 터	까 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⑩ 자격면허		⑪ 상 별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사 항
⑫ 특 기	⑬ 취 미	⑭ 운 동	⑮ 종 교
⑯ 경 력			
부 터	까 지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2페이지)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⑰ 재 산 상 황 가. 부동산 (평) 나. 동 산 (원)							
⑱ 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직 업	현 주 소					
⑮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성 별	연 령	직 업	최종 학력	신 설	비고

⑨ 자격면허		⑩ 상 별	
년 월 일	종 별	년 월 일	사 항
⑪ 특 기	⑫ 취 미	⑬ 종 교	
		<u>〈삭 제〉</u>	
⑭ 경 력			
부 터	까 지	경 력 사 항	발 령 청
		*	

(2페이지)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u>〈삭 제〉</u>							
<u>〈삭 제〉</u>							
⑮ 가족상황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성 별	연 령	직 업	최종 학력	신 설	비고

1.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u>사·도, 시·군·구</u>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u>합격자</u> (1) <u>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u>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을 부착할 것 (2) 주민등록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4) 경력증명서(<u>경력이 있을시</u>) 1통 (5) 면허증 또는 기술자격증 <u>소지자는 그 사본 1통</u>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u>국가보훈처발행관계증명서</u> 1통 (7) 신원진술서(<u>소정용지</u>에 사진 2매를 완전 부착할 것) 2통 <u><신 설></u> (8) <u>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u>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는 등록원서와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u><신 설></u>	1.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u>○○○○○○○○○</u>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u>합격자의 경우</u> (1) 사진을 부착한 임용후보자등록원서 1통 (2) 주민등록초본(전체 이력기재)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4) 경력증명서 <u>1통(경력이 있는 경우)</u> (5) 면허증 또는 기술자격증 <u>사본 1통(면허증 등을 소지한 경우)</u> (6) 취업보호대상자는(전몰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u>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u> 1통 (7) 신원진술서(<u>정해진 서식</u>에 사진 2매를 완전 부착할 것) 2통 ※ 국가기밀을 취급하는 직위에 임용될 예정인 후보자만 제출 (8) <u>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u>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 위 구비서류는 등록원서에 같이 첨부해야 하며, 등록원서와 신원진술서에는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사진은 응시원서에 부착된 탈모 상반신 사진(3.5x4.5cm, 여권용) 5매가 필요함)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할 경우 서류 제출받지 않음(본인이 정보에 대한 공동이용을 동의하지 않거나 공동이용이
--	---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u>합격자</u> <u>임용후보자등록원서 1통에 현직 근무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u>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부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반드시 동봉한다. 5. 원서 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u>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u> 다. 각 란에는 다음 요령에 <u>의하여</u> 기재하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한글과 한자를 <u>명기한다.</u> ② 생 년 월 일……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③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를 <u>기재</u> ④ 성 별……<u>남·녀</u> 해당 □에 √표를 한다. ⑤ 회 망 지 역……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⑥ 시험합격구분……(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⑦ 주 소……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u>불가한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u>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u>합격자의 경우</u> (1) 사진을 부착한 임용후보자등록원서 1통 (2) <u>현직 근무관서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u>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한다.(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3자에게 위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 <삭 제> 5. 원서 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의미가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u>연월일을 작성할 때에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u> 다. 각 란에는 다음 요령에 <u>따라</u> 기재하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① 성 명 ……한글과 한자를 <u>명확하게 기재한다.</u> ② 생 년 월 일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삭 제> ③ 성 별 ……<u>남/여</u> 해당 □에 √표를 한다. ④ 회 망 지 역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⑤ 시험합격구분 ……(예) 72년, 제1회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⑥ 주 소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	--

+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도로명기재)

- ⑧ 병역……미필란에는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 영장미교부, 징집연기증, 병역면제처분 기타 사유를 기재한다.
- ⑨ 학력……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연수를 기입한다.
- ⑩ 자격, 면허……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 ⑪ 상벌……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 ⑫ 경력……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 ⑬ 재산상황……부동산은 가옥·임야·전답 등으로 구분하여 평수로, 동산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 ⑭ 가족상황……가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최종학력을 기입한다.
- ⑮ 우무인……오른쪽 무인(엄지손가락)을 날인한다.
-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필증을 추후 본인에게 송부한다.

(도로명기재)

- ⑦ 병역 ……미필란에는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 영장미교부, 징집연기증, 병역면제처분 등 그 밖의 사유를 기재한다.
- ⑧ 학력 ……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하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연수를 기입한다.
- ⑨ 자격, 면허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 ⑩ 상벌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 ⑪ 경력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 <삭제>
- ⑫ 가족상황 ……가족의 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연락처 등을 기입한다.
- <삭제>
- <삭제>

[별지 제5호서식]

년도 제 회 ○○○○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 격	
			불 합 격	
타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제5호서식]

년도 급 공개경쟁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상 생일	/	/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다른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우 수	
			보 통	
			미 흡	
다른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1) 우수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신 설>

[별지 제5호의2서식]

년도 제 회 경력경쟁임용시험등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본인필적 :					응시번호	
						성명	(한글)
주민등록상 생일							(한자)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	중	하
가.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계	개	개	개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다른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		판 정	합격	
다른 위원이 “하”로 평정한 항목의 개수			불합격	
		담 당 확 인		

□ 시험위원 유의사항

1.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2.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에 ○표로 평정하시고, 그 개수를 기재하십시오.

<신 설>

[별지 제7호서식]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고양시 인사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우)												
전자우편											복수국적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 시 표 ()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생년월일														
20 년 월 일 고양시 인사위원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 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시험본부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	--	--	--	--	--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신 설>

[별지 제8호서식]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 시 원 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고양시 인사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우)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고양시 인사위원장 ㉠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과 전부개정된 「경기도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반영하여 우리 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되어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행정안전부 참고 조례안과 전부개정된 경기도 조례를 반영하여 위험도 평가단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안 제5조제4항).
- 나.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의 제명이 변경되어 조문을 정비함(안 제7조).
-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0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재난대응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재난대응과 자연재난팀(031-8075-2992)

- 팩 스 : 031-8075-499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을 “제21조에서 위임된” 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도 평가”란 지진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도 평가단”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을 말한다.
3. “위험도 평가단원”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고양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1회이상”을 “1회 이상”으로 한다.

- ④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제6조제2항 중 “감안”을 “고려”로, “언어”를 “받아”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 1. 위험: 별지 제3호서식
- 2. 사용제한: 별지 제4호서식
- 3. 사용가능: 별지 제5호서식

④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일체”를 “모두”로, “경유하여”를 “거쳐”로 한다.

제12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재난대응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재난대응과장 윤 광 옥
	팀 장 성 명	자연재난팀장 안 하 립
	담 당 자 성명·전화	왕 시 연 031-8075-2992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해제) 신청서

회원번호		신 청 일	
------	--	-------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주소 : (-)			전화 : ()
			FAX :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그 밖의 사항()			
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mm×297mm

[별지 제2호서식]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명 :	사 진
소속 :	
주소 :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합니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고양시 재난안전 대책본부(Tel : xxx-xxxx-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빨강〉
위험!	
본 시설물에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십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에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십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와 출입이 가능합니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십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십시오.	〈분홍〉
출입통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 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제21조 에서 위임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고양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고양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도 평가”란 지진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도 평가단”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을 말한다. 3. “위험도 평가단원”이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고양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위험도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③ (생략)

④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⑥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제5조(평가단 구성·운영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해야 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

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위험도 평가단원의 요건

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⑥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본부장이 교육·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생략)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기타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위험 [별지 3호 서식]
2. 사용제한 [별지 4호 서식]
3. 사용가능 [별지 5호 서식]

-----.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고려-----
-----받아-----
-----.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파악해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② 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1. 위험: 별지 제3호서식
2. 사용제한: 별지 제4호서식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 서식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생략)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경기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평가단의 구성·운영, 위험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3. 사용가능: 별지 제5호서식

④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모두
-----거쳐-----
-----.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운영세칙) ----조례에서-----

-----필요한-----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해제) 신청서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해제) 신청서			
회원 번호		신 청 일		회원 번호		신 청 일	
성 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급		소 속		직 급	
주소 : (-)		전화 : ()		주소 : (-)		전화 : ()	
		FAX : ()				FAX : ()	
E-mail :				E-mail :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기타()				전문분야 : ☐ 건축물 ☐ 교량·터널 ☐ 댐·저수지 ☐ 철도 ☐ 원자력시설 ☐ 항만 ☐ 가스·전력·통신 ☐ 그 밖의 사항()			
본인은 <u>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의한</u>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본인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 해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귀하			
210mm×297mm				210mm×297mm			

[별지 제2호서식]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소 속 :

주 소 :

사 진

위 사람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합니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분실, 습득하신 분께서는 고양시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Tel : xxx-xxxx-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별지 제2호서식]

< 앞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증

성 명 :

소 속 :

주 소 :

사 진

위 사람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원임을 증명합니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인)

120mm×90mm

< 뒤 >

본 단원증을 습득하신 분께서는 고양시 재난안전
대책본부(Tel : xxx-xxxx-xxxx)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120mm×90mm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빨강>

위험!

본 시설물은 거주와 출입을 금합니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십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3호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빨강>

위험!

본 시설물에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십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4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의 거주와 출입에 주의 바랍니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십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4호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노랑>

사용제한

본 시설물에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경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십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5호 서식]

긴급 위험도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와 출입이 가능합니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십시오.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5호서식]

긴급 위험도 평가 결과 <초록>

사용가능

본 시설물은 거주와 출입이 가능합니다.

☐ 평 가 자 :

☐ 평가일시 :

이 표지를 떼지 마십시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입니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6호 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십시오.
〈분 홍〉

출입통제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별지 제6호서식]

이 표지를 떼지 마십시오.
〈분 홍〉

출입통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긴급평가 결과,
본 시설물은 붕괴우려가 있어 출입을
통제합니다.

고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
[Tel :]

210mm×297mm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나. 답례품의 종류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23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0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평화미래정책관)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평화미래정책관 특례시추진팀(031-8075-2438)

- 팩 스 : 031-8075-490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고양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고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로 한다)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내로 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제4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 특산품과 시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 축산물
3.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
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8.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
9. 농수산가공품 등의 제조품일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10.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 공예품
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 관광 입장권 등 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

중 서비스의 상품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지
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시에 생산·제조 기반이 있는지
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대형 유통 업체에 입점했거나 시 및 민간 업체 온라인 쇼핑몰 또는 TV 홈쇼핑에 입점 및 판매 이력이 있는지
7.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공고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 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답례품비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 등의 발급

제9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10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 기금의 여유자금은 「고양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해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② 시장은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영 제7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규정한 비율의 금액 내에서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관 등)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이 정하는 사람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3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

- 나.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다.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 라.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마. 지역의 농어업인 단체 등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 바. 그 밖에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5. 제1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

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 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 운용 계획과 전년도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시작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 안건 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21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양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2조(의견 청취)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기금 운용 계획의 수립) 기금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 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기금의 결산) 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이하 “결산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고양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
2. 기금 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3. 현금 및 지출 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결산보고서는 고양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2. 제6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공모
3. 제1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4. 제24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소관부서		평화미래정책관
입 안 자	과 장 성 명	평화미래정책관 양 승 환
	팀 장 성 명	특례시추진팀장 김 대 성
	담 당 자 성명·전화	양 윤 수 031-8075-2438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주산성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과 관람객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관람차의 운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행주산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나. 행주산성의 관람시간과 문화재 활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다. 「문화재보호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함.
- 라. 관람차의 운행과 이용료 및 면제 대상자를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관람차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 바. 행주산성 내 제한되는 행위를 규정함(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중요사항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0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관광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관광과 관광정책팀(031-8075-3404)

- 팩 스 : 031-8075-492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재인 행주산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적지”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적으로 분류된 중요문화재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사적지 내의 모든 시설물을 말한다.
3. “관람차”란 사적지 내에서 관람객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전기 동력 장치를 장착하여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행주산성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제4조(관람시간 등) ① 행주산성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입장시간은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3일 전까지 고양시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관람료)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문화재 활용 등) ① 시장은 사적지를 보호하고 행주산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재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양한 역사·문화·생태 교육 과정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7조(체험료 등)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체험료, 재료비 등을 부담할 수 있다.

제8조(관람차 운영 등)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람차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1. 기상 악화로 관람차 운행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관람차의 운행노선 및 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용료 등) ① 관람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관람차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탑승권 발권 후 천재지변 등으로 출발하지 못한 경우
3. 탑승권 발권 후 질병 등으로 탑승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차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무수행을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
2.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 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인 사람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관람차의 이용객이 많은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탑승료, 운행 장소 및 주의사항 등을 게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 및 편의제공을 위하여 운영 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주의사항 및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계자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① 시장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가입의 대상, 보상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위탁운영) 시장은 관람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관람의 조건 등) 시장은 건전한 관람환경 조성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하며, 필요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시설물의 유지 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행위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시설물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관람객을 상대로 영리 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4. 고성방가, 소음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5. 흡연, 음주, 취사 행위
6.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7. 인화물질, 무기류 등 위험물 소지 또는 자전거를 가지고 입장하는 행위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 의심 증상의 발현으로 다른 관람객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입장하는 행위
9. 그 밖에 시장이 금지하는 행위

제16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관람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 또는 변상하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관광과
입 안 자	과 성 명	관광과장 김 동 원
	팀 성 명	관광정책팀장 김 관 양
	담 당 자 성명·전화	성 남 신 031-8075-3404

[별표 1]

관람차 이용료(제9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왕 복	편 도	비고
이용요금	2,000	1,000	

중요사항 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4조(공개시간 및 휴관일) ① 문화재 공개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 한다.</u> <u>② 입장시간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공개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u> <u>③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u> <u>④ 문화재 관람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u> <u>⑤ 문화재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시간을 단축할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돌발사고에 따라 임시로 문화재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제4조(관람시간 등) ① 행주산성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u> <u>2. 11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u> <u>② 입장시간은 제1항에 따른 관람시간이 시작될 때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u> <u>③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평일에 휴관한다.</u> <u>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일 3일 전까지 고양시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u> <u>제6조(문화재 활용 등) ① 시장은 사적지를 보호하고 행주산성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재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u> <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양한 역사·문화·생태 교육 과정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u> <u>제7조(체험료 등)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은 체험료, 재료비 등을 부담할 수 있다.</u> <u>제8조(관람차 운영 등) 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관람차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u>제8조(사용허가 및 사용료 등) ① 행주산성 경내(이하 “경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u>1.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u> <u>2. 물품의 판매, 사진촬영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u> <u>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사용료 산정방법, 징수절차 등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u> <u>제9조(구비서류) ① 제8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u> <u>1. 사용목적</u> <u>2. 위치 및 장소</u> <u>3. 사용시간</u> <u>4. 그 밖에 필요한 사항</u> <u>② 제1항의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위,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허가 순위를 정하여 선순위 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 다</u>	<u>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하지 않는다.</u> <u>1. 기상 악화로 관람차 운행이 어려운 경우</u> <u>2. 그 밖에 시장이 관람객의 안전에 위험이 따른다고 인정하는 경우</u> <u>③ 관람차의 운행노선 및 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 <u><삭 제></u> <u><삭 제></u>

현행	개정안
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9조(이용료 등) ① 관람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관람차 고장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탑승권 발권 후 천재지변 등으로 출발하지 못한 경우 3. 탑승권 발권 후 질병 등으로 탑승하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2. 제안이유

-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재 관람시간 및 이용 조건 등의 내용이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통합하여 규정됨에 따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이 규칙을 폐지함.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사항 없음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2년 10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연락처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관광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 전 화 : 관광과 관광정책팀(031-8075-3404)

- 팩 스 : 031-8075-492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고양시 행주산성문화재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관광과
입 안 자	과 장 성 명	관광과장 김 동 원
	팀 장 성 명	관광정책팀장 김 관 양
	담 당 자 성명·전화	성 남 신 031-8075-3404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표지 설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고양시 덕양구청장

1. 기준점의 명칭 및 번호 : 지적도근점 7704~7708(5점)
2. 직각좌표계의 원점명 : 세계측지계
3. 좌표 및 설치일 : [붙임]과 같음
4. 표지의 재질 : 철재
5. 측량성과 보관 장소 :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6. 연락처 :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재조사팀(☎031-8075-5170)

지적기준점표지 설치 현황

연번	명칭	번호	세계 좌표		설치일	소재지	표지 재질	측량성과 보관 장소	비고
			X (m)	Y (m)					
1	지적 도근점	7704	567154.53	188094.42	2022. 10. 5.	관산동	철재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2	지적 도근점	7705	567172.93	188167.52	2022. 10. 5.	관산동	철재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3	지적 도근점	7706	567112.75	188227.96	2022. 10. 5.	관산동	철재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4	지적 도근점	7707	567074.72	188281.35	2022. 10. 5.	관산동	철재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5	지적 도근점	7708	567078.41	188318.36	2022. 10. 5.	관산동	철재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53호선]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고양시 고시 제2022-46호(2022. 2. 18.)로 고시한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4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3-553호선(서오릉로663번길 도로 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분할측량 반영의 사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고 양 시 장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변경없음]

- 시점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94번지
- 종점 :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578-3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도시계획시설(소로3-553호선) 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면적 (㎡)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정	소로	3	553	6	국지 도로	206		원흥동 594	원흥동 578-3	일반 도로	-	고양시고시 제106호 (09.05.04.)	-
금회시행 (기정)	소로	3	553	6	국지 도로	206	1,224	원흥동 594	원흥동 578-3	일반 도로	-	-	-
금회시행 (변경)	소로	3	553	6	국지 도로	206	1,189	원흥동 594	원흥동 578-3	일반 도로	-	-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 주소 [변경없음]

- 성 명 : 고양시장(공사과장)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변경없음]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3.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조사·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

1)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편입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동	지번	지 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1	기정	덕양구 원흥동	344-1	대	71	22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 *09동 301호	김O휴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주)국민은행	근저당	분할
	변경	덕양구 원흥동	344-8	대	16	16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 *09동 301호	김O휴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주)국민은행	근저당 공동담보	
		덕양구 원흥동	344-5	도	7	7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 1*, *09동 301호	김O휴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26	(주)국민은행	근저당 공동담보	
2	기정	덕양구 원흥동	594	도	575	304	국	국토교통 부				분할
	변경	덕양구 원흥동	594-2	도	259	259	국	국토교통 부				
3	기정	덕양구 원흥동	345-2	대	643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34번길 7, 103동 101호	(합)신성베 스티아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85	부천중앙 새마을금고	근저당 공동담보	분할
	변경	덕양구 원흥동	345-34	대	14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34번길 7, 103동 101호	(합)신성베 스티아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85	부천중앙 새마을금고	근저당 공동담보	

일련 번호		소재지		공부상		실행입	소유자		관계인			비 고
		동	지번	지 목	면적	면적	주소	성명	주소	성명	권리의 종류	
4	기정	덕양구 원흥동	345-21	도	37	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34번길 7, 103동 101호	(합)신성배 스티아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85	부천중앙 새마을금고	근저당 공동담보	분할
	변경	덕양구 원흥동	345-35	도	13	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34번길 7, 103동 101호	(합)신성배 스티아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 485	부천중앙 새마을금고	근저당 공동담보	
5	기정	덕양구 원흥동	345-26	도	8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6*3번길 6*-9	박O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75	지도농업 협동조합	근저당	
6	기정	덕양구 원흥동	345-27	도	23	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홍도로4*4번길 4*-72	박O양				
7	기정	덕양구 원흥동	345-24	임	33	3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홍도로4*4번길 4*-72	박O양				
8	기정	덕양구 원흥동	341-15	도	20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3*3-94	박O안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6*-10, *충동 *03호	이O규	근저당	제척
	변경	덕양구 원흥동	341-15	도	20	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3*3-94	박O안				
9	기정	덕양구 원흥동	341-21	대	82	33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7길 54, *01동 1105호	김O석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 공동담보	
	변경	덕양구 원흥동	341-33	대	34	34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7길 54, *01동 1105호	김O석	서울시 중구 을지로 79	중소기업 은행	근저당 공동담보	
10	기정	덕양구 원흥동	341-16	도	40	3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솔밭1길 *1	박O환 외 1인				분할
	변경	덕양구 원흥동	341-31	도	32	3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솔밭1길 *1 외 1	박O환 외 1인				
11	기정	덕양구 원흥동	342	대	409	20	경기도 고양군 원당읍 원흥리 4*2	김O만				분할
	변경	덕양구 원흥동	342-1	대	31	3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663번길 *6-12 외 2	이O옥 외 2인				
12	기정	덕양구 원흥동	341-25	도	213	2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3*3-94	박O안	서울시 은평구 증산서길 6*-10, *충동 *03호	이O규	근저당	
	변경	덕양구 원흥동	341-25	도	213	2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3*3-94	박O안	서울시 종로구 평창11길 6(평창동)	세검정새마 을금고	근저당 공동담보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48	종로3,4가 새마을금고	근저당 공동담보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16길 3(무악동)	종로서부새 마을금고	근저당 공동담보	
									서울시 종로구 지봉로99-1(창신동)	종로동부새 마을금고	근저당 공동담보	
13	-	덕양구 원흥동	339	전	1,544	379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092번길 39-50, 201동 1204호	청주한씨봉 공과중증				
14	-	덕양구 원흥동	341-9	임	6,446	83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092번길 39-50, 201동 1204호	청주한씨봉 공과중증				
15	-	덕양구 원흥동	337-7	대	8	8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2*2나길 2*, 1*04호	김O례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산업협동 조합중앙회	근저당 공동담 보	
16	-	덕양구 원흥동	337-3	전	212	3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6*3번길 *8	임O경				
합 계				기정	10,364	1,224						
				변경	8,849	1,189						

2)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단 위	소유자		비 고
							주소	성명	
1	원흥동	341-16	옹벽	H=1.5m	24.0	m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6*3번길 *4	박O안 외 1인	
2	원흥동	345-24	석축	H=4.5m	15.0	m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흥도로4*4번길 4*-72	박O양	2열
3	원흥동	342	옹벽	H=2.5~3.5m	24.0	m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2	이O화	
4	원흥동	339	비닐하우스		4.0	m ²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2092번길 39-50, 201동 1204호	청주한씨종중	

도시계획시설[학교 제112호(명현학교)] 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99-40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학교 제112호(명현학교)]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 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고 양 시 장

1.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99-40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학교) 사업
- 명 칭 : 명현학교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도시계획시설(학교)

구분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99-11	31,546	고고제78호 98-09-18	
시행	공공문화체육시설	학교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 99-11	433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사회복지법인 중앙사회복지회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세솔로 138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3. 3.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소재지	위치	지 목	면적(㎡)		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			비고
			지적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삼송동	99-40	학	9,132	433	사회복지법인 중앙사회복지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동99-11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7일

고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500번길 81 등 2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별 지 참 조				
종전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 지 참 조				
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토지정보과(☎8075-3096~9)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2. 10.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고양시 도로명주소 신규고시 조서

연번	종 전 주 소	도 로 명 주 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부 여 사 유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475-3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500번길 81 (용두동)	2022-10-07	20100126	서오릉로 시점에서 5000m에 위치한 도로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912-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무민로 90 (대자동)	2022-10-07	20090911	최영장군의 시호를 도로명에 적용	
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24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54-19 (대장동)	2022-10-07	20100126	대주로 시점에서 1070m에 위치한 도로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장동 24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54-21 (대장동)	2022-10-07	20100126	대주로 시점에서 1070m에 위치한 도로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안진5길 22 (지축동)	2022-10-07	20191101	고유지명 및 유래 등을 고려하여 선정	
6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118-2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14-24 (가좌동)	2022-10-07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7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구산동 1504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법곳길 568-68 (구산동)	2022-10-07	20090911	법정동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395-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730번길 77-103 (원흥동)	2022-10-07	20100126	고양대로 시점에서 17300m에 위치한 도로	
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산2길 58 (덕은동)	2022-10-07	20190531	고유지명 및 위치예측성 고려	
1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37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해포길 21-1 (현천동)	2022-10-07	20100126	옛 포구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19-2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473-84 (지축동)	2022-10-07	20090710	북한산 지명 인용	
1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692-6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막1길 32 (오금동)	2022-10-07	20120601	고유 지명을 도로명에 적용	
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4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로200번길 120-26 (현천동)	2022-10-07	20100126	대덕로 시점에서 2000m에 위치한 도로	
1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덕산로 90 (덕은동)	2022-10-07	20000727	대덕산 명칭을 도로명에 적용	
15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274-2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181번길 115-1 (지영동)	2022-10-07	20100126	지영로 시점에서 1810m에 위치한 도로	
16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동 27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지영로181번길 115 (지영동)	2022-10-07	20100126	지영로 시점에서 1810m에 위치한 도로	
1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488-7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꽃내음1길 41 (향동동)	2022-10-07	20180525	주민의견 및 유래 반영	
18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458-1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꽃내음2길 62 (향동동)	2022-10-07	20180525	주민의견 및 유래 반영	
1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4-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48 (화정동)	2022-10-07	20090911	화정동의 중앙을 지나는 도로	
20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396-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387번길 139 (대화동)	2022-10-07	20100126	대산로 시점에서 3870m에 위치한 도로	
2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119-3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북한산로 473-62 (지축동)	2022-10-07	20090710	북한산 지명 인용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지번 주소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해 당 없 음				

고양시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조서

연번	중전 주소(지번주소)		도로명주소(새주소)	관련지번 변경일	변경 사유	비고
	변 경 전	변 경 후				
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206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2068-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로146번길 38-12	2022-10-05	토지이동(분할)에 따른 변경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417-3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417-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396번길 80-72	2022-10-04	관련지번 변경	

고양시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조서

연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폐지일	폐지 사유	멸실건을 고시일자	법정동	비 고
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중로15번길 110	2022-10-04	건축물대장 말소	2011-07-29	일산동	
2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730번길 77-103	2022-10-04	건물 신축	2011-07-29	원흥동	
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로 14-24	2022-10-05	건물 신축	2015-03-05	가좌동	
4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54-21	2022-10-05	건물 신축	2011-07-29	대장동	
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주로107번길 54-23	2022-10-05	건물 신축	2011-07-29	대장동	